

선박운항관리에 대한 선장의 법적책임에 관한 소고

박성호*

* 목포해양대학교

A Study on the Liabilities of Shipmaster for the Management of Ship Operations

Sung-ho Park*

*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

핵심용어 : 해양사고, 선박운항관리, 선장, 선원법

Key Words : Maritime accidents, Management of ship operations, Shipmaster, Seamen Act

**선박운항관리에 대한 선장의
법적책임에 관한 소고**

**목포해양대학교
박 성 호**

II. 선박운항관리에 대한 선장의 권한과 의무

✓ **선장의 직무상 권한**

- 지휘명령권
 - 선장은 항해의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해상항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의 의사에 구애되지 않고 독자의 입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강력하고 광범위한 직무권한, 즉 선박권력을 부여하고 있음
 - 따라서 「선원법」에서도 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,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(법 제6조)

I. 연구의 필요성

-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로 인한 해양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, 선박운항관리에 대한 선장의 책임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
- 현행법상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한 선장의 권한과 의무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함
- 특히 당직항해사의 과실로 인해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많은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
- 연구 범위
 - 선박운항관리에 대한 선장의 권한과 의무,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사례와 법원 판례 분석
 - 선장의 책임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

II. 선박운항관리에 대한 선장의 권한과 의무

✓ **선장의 직무상 의무**

- 선장의 직접지휘의무
 -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, ② 선박이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, ③ 선박의 충돌·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, ④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(법 제9조)
 - 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”란 ① 안개, 강설 또는 폭풍우 등으로 시계가 현저히 제한되어 선박의 충돌 또는 좌초의 우려가 있는 때, ② 조류,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선박의 침로 유지가 어려운 때, ③ 선박이 항해 중 어선군을 만나거나 운항 중 인 항로의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는 때, ④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설비 등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선박 운항이 곤란하게 된 때(시행규칙 제4조의2)

* parksh@mmu.ac.kr, 061-240-7160